

대상상표법_도스트

▲ 도스트-1차추록

- Archive03 p9 2.상표의 사용 (8)광고행위 2)킬링Case 내용추가 ⑤ [광고행위의 성립요건] ★★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,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, 특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(2022후10265 CONTOUR COIL 사건).
- Archive03 p9 2.상표의 사용 (8)광고행위 2)킬링Case 내용추가 ⑥ [거래서류의 의미 및 범위] ★★ (다)목의 '거래서류'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 함된다(2022후10265 CONTOUR COIL 사건).
- Archive03 p16 3.상표로서의 사용 (8)완성품/부품에 대한 사용 [완성품과 부품 사이에 경합이 없는 경우=완성품에 대한 사용]
- Archive11 p80 기술 [137] ~ 따라 세계저작 소유권카구로부터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~
- Archive11 p94 8.제34조제1항제2호 (4)사용하거나 사용준비 중 2)킬링Case 내용교체 [제3자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] ★★ 제3자가 계약 체결 등을 상대로 국내에서 개시, 판매하는 경우, 위 제3자의 행위를 외국상표권자의 국내 사용 행위로 볼 수 있다선사용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,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'타인이 사용한 상표'에 해당한다(2021허2694 2022후10285)
- Archive12 p101 6.제34조제1항제2호 (3)동업·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 [1] 동업·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
- Archive12 p102 Case_ ~ 상표 X는(국내외 수요자간에 인식되어 있지 않음)에 대한 ~
- Archive13 p110 Case_ 5번째줄 ~ 판단하여 상표법 제35조(선출원)제34조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 제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~
- Archive16 p138 기술 [271] 제41조에 따른 보정의 경우,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~
- Archive16 p138 기술 [272] 제41조에 따른 보정의 경우, 심사관이나 심판관이 ~
- Archive16 p138 기술 [273] 제41조에 따른 보정의 경우,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~
- Archive16 p138 기술 [274] 제41조에 따른 보정의 경우,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~
- Archive21 p220 2.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 (2)너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 2)킬링Case ① [제110조 제1항·제3항·제6항의 경우] ★ 상표법 제110조 제1항
- Archive26 p283 2.제121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(2)권리범위 확인심판이란 무엇인가 3)종류 ① [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]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
- Archive28 p309 3.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국 관청 절차 (4)국제상표등록출원의 취급 3)보정의 특례 Article_ ② ★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1항제2호의(2주: 재심사의 청구기간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▲ 도스트-2차추록 NEW

- Archive08 p46 1.본질적 식별력이 없는 상표 (3)기술적 표장 내용추가 ★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양당국 사건).
- Archive08 p46 1.본질적 식별력이 없는 상표 (3)기술적 표장 내용추가 ★★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,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
- Archive10 p70 4.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(4)상품이나 영업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 내용정정 ① [식별력을 손상'시킬 염려] ★★ 타인(판례). 또한, 타인의 저명상표를 혼동가능성이 없는 비유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저명상표의 '상품표지'나 '영업표지'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을 손상시키
- Archive15 p127 1.심사의 대상 (4)심사의 순위 3)예외-시행령 내용삭제 ④[전문기관에 선행조사 및 특허청장과의 결과통제자 요청단 출원의 경우 서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(시행령 제12조 제8호)
- Archive03 p247 5.심판의 종료 (2)심결에 의한 종료 8)심결 확정 효과 내용추가 ★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, 상표권에 대한 집행권 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
- Archive31 p348 3.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Article_ 내용추가 ★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목적은, 종전에는 산지 및 현저한 지리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 (2022허5713 광천김 사건).
- Archive31 p348 3.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Article_ 내용추가 ★ 여기서, 상품의 특정 품질·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'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 법, 시설 등의 인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연관되어 있어 그와 같은 지리적 환경이 없다면 당해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'라고 규정하여 지리적 표시의 요건으로 품질·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'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그 문언상 상품 성 중 어느 하나만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(2022허5713 광천김 사건).
- Archive31 p354 3.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(6)취소사유 1)일반적인 취소사유 내용추가 ★ 제119조제1항제7호가목 단서의 단체표장권자의 상당한 주드 다. 따라서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정관을 위반한 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속 단체원에게 오인·혼동행위를 관하여 소속 단체원을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,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단체표장권자에게 있다고 보아

